

2019.07.

2019년 세법개정안 - 상증세 및 양도소득세

1. 가업상속공제 관련 제도 변화

(1)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 완화 (상증법 §18, 상증령 §15)

□ 개정내용

현행	개정안
□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관리 ○ 사후관리 기간: 10년 ○ 고용유지 요건 - 매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기준 고용인원의 80% 이상 - 10년간 평균 정규직 근로자 수가 기준 고용인원의 100%(중견기업은 120%) 이상 ○ 업종 유지 요건 - 표준산업분류 상 소분류 내 업종 변경 허용 ○ 자산유지 요건 - 예외적 처분 허용 · 수용, 시설의 개체, 사업장 이전 등 처분·대체취득시, 내용연수 도달 자산 등	□ 사후관리 완화 ○ 기간 단축: 10년 → 7년 ○ 중견기업의 고용유지의무 완화 - 동일 - 7년간 평균 정규직 근로자 수가 기준고용인원의 100% 이상(중견기업도 동일) ○ 업종 유지 요건 완화 - 중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(중분류 외 변경은 전문가 위원회 심의 필요) ○ 자산 처분 허용범위 확대 - 예외적 처분 허용사유 추가 · 업종변경 등에 따른 자산 처분 및 재취득 필요시 등

□ 개정의 효과

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지나치게 까다로운 사후관리요건으로 인하여 기업은 경제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움이 있음

사후관리요건이 완화됨에 따라,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적용하여, 원활하게 가업을 승계 할 수 있고, 경제환경 변화에 좀 더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. 특히, 기존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은 상속인도 개정된 사후관리 요건(사후관리 기간 제외)을 적용함

□ 적용시기

2020. 1. 1. 이후 상속이 개시되어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. 다만, 업종·자산·고용요건 완화는 개정 이전에 공제를 받은 후 사후관리 중인 경우에도 적용

(2) 탈세·회계부정 기업인의 가업상속 혜택 배제 (상증법 §18)

□ 개정내용

피상속인/상속인이 상속 기업의 탈세 또는 회계부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혜택 배제

○ 요건

- ① (범죄행위) 상속대상 기업의 경영과 관련한 탈세 또는 회계부정
- ② (행위시기) 상속개시 10년 전부터 사후관리기간까지의 탈세·회계부정
- ③ (처벌대상자)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
- ④ (처벌 수준) 확정된 징역형 또는 일정 기준 이상 벌금형

○ 효과

탈세·회계부정행위 시기	형 확정 시기	효과
공제 전 행위	가업상속공제 전	공제 배제
	사후관리 기간 중	추징
	사후관리 기간 이후	추징
사후관리기간 중 행위	사후관리 기간 중	추징
	사후관리 기간 이후	추징

* 사후관리기간 후 행위: 적용대상이 아님

□ **개정의 효과**

가업상속공제 적용전 10년 및 사후관리기간 7년 동안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가업의 탈세/회계 부정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,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(공제 배제 또는 추징)

따라서,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기업인(피상속인 및 상속인)은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위하여 성실하게 가업을 책임 경영해야 함

□ **적용시기**

2020. 1. 1. 이후 상속이 개시되어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. 종전에 공제받은 분은 적용하지 않음

2. 상속세 연부연납특례 대상 확대 (상증법 §71, 상증령 §68)

□ **개정 전**

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거나,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공제를 적용 받지 않는 경우, 연부 연납특례(가업기간에 따라 연부연납기간 10년 또는 20년)를 적용할 수 있음

□ **개정내용**

가업상속공제 요건보다 완화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부연납특례의 적용이 가능함

구분	요건
대상	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
피상속인	(지분) 5년 이상 최대주주 지분(상장 30%, 비상장 50%) 보유
	(대표이사) 다음의 요건 중 한 가지 요건 충족 (i) 가업 영위기간중 30% (ii) 5년 이상(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직을 승계한 경우) (iii)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중 3년 이상의 기간
상속인	상속세 신고기한 내 임원 취임,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

□ **개정의 효과**

상속인이 상속세 납부를 위한 단기적 현금 확보에 대한 부담 완화

□ **적용시기**

2020. 1. 1.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

3. 공익법인의 공익성 및 투명성 제고

(1) 의무지출제도 확대 (상증법 §48 ②, 상증령 §38 ⑩, ⑪)

□ 개정 전

지분율 5%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성실공익법인은 기준자산가액의 일정비율(1% ~ 3%)을 공익목적사업에 지출해야 함. 미달사용이 있는 경우, 미달사용액의 10%를 가산세로 부과함

□ 개정내용

성실공익법인 외에 기준규모(자산 5억원 또는 수입금액 3억원 이상. 단, 종교법인, 공공기관,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제외) 이상의 공익법정도 의무지출제도(기준자산가액의 1%) 적용 대상에 포함

□ 개정의 효과

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에 활용하도록 유도

□ 적용시기

2021. 1. 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

(2) 의무공시 대상 확대 (상증법 §50의3 ①, 상증령 §43의3 ①)

□ 개정 전

자산 5억원 이상 또는 연간 수입금액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결산서류(재무상태표, 운영성과표 등)를 공시해야 함. 결산서류 공시의무 위반시 자산총액의 0.5%를 가산세로 부과함

□ 개정내용

모든 공익법인은 결산서류를 공시하도록 개정. 단, 자산 5억원 미만이고 연간 수입금액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양식을 사용함(간편양식 적용법인은 2023년까지 가산세 미부과)

□ 개정의 효과

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

□ 적용시기

2020. 1. 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

(3) 외부회계감사 대상 확대 (상증법 §50 ③, 상증령 §43 ③)

☐ 개정 전

자산총액 100억원 이상 공익법인은 외부회계감사 대상이며(종교, 학교법인 제외), 외부회계감사 의무 위반시 수입금액의 0.07%를 가산세로 부과함

☐ 개정내용

연간 수입금액 50억원 이상 또는 기부금 2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도 외부회계감사 적용 대상에 포함

☐ 개정의 효과

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

☐ 적용시기

2020. 1. 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

(4) 공시의무 강화 (상증법 §50의3 ①)

☐ 개정 전

공익법인은 (i) 공익법인의 주식 출연·취득 등 내용, (ii) 공익법인에 주식 출연자와 해당 주식법인의 관계 등, (iii) 재무상태표, 운영성과표 등을 공시해야 함

☐ 개정내용

공시사항에 재무제표 주석기재사항도 포함

☐ 개정의 효과

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

☐ 적용시기

2020. 1. 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

(5)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및 회계 감리제도 도입 (상증법 §50, 상증령 §43)

☐ 개정내용

-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: 일정규모 이상 공익법인(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 또는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인 외부감사대상 공익법인)은 일정기간 감사인을 자유 선임할 수 있으나 그 후에는 국세청장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

- 감리제도: 기재부장관이 회계 감리 후 감사기준 위반 감사인은 금융위에 통보하고, 금융위에서 감사인 제재

□ 개정의 효과

공익법인 외부감사의 투명성 제고

□ 적용시기

2022. 1. 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

4.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제도 개선 (상증법 §63, 상증령 §49의2)

□ 개정 전

최대주주 보유주식은 (i) 기업규모와 (ii) 최대주주의 지분율에 따라 할증율이 차등 적용됨

지분율	일반기업	중소기업(*)
50%이하	20%	10%(0%)
50%초과	30%	15%(0%)

(*) 중소기업의 경우, 2020년말까지 할증 배제(조특법 제101조)

□ 개정내용

최대주주 보유주식은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만 적용되며, 최대주주의 지분율에 따른 차등은 폐지됨

구분	일반기업	중소기업(*)
할증율	20%	0%

(*) 중소기업에 대한 조특법상 할증 배제 규정은 삭제

□ 개정의 효과

최대주주 보유주식의 할증평가 방법은 기업 규모에 따른 차등 적용으로 단순해짐. 특히, 최대주주의 지분율에 따른 차등 적용 폐지로 인하여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50%를 초과하는 경우의 상속·증여세 인하 효과도 발생함

□ 적용시기

2020. 1. 1.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 받는 분부터 적용

5.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부동산 비율 판정기준 합리화 (소득법 §94, 소득령 §158 ⑦)

□ 개정 전

법인의 부동산 비율은 법인의 자산총액 중 (i) 토지·건물·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(ii) 자법인의 부동산 보유비율 상당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함

□ 개정내용

법인의 부동산 비율 계산시 손자법인의 부동산보유비율 상당액을 포함하여 계산함(합산대상이 되는 손자법인의 범위는 시행령에서 규정 예정)

□ 개정의 효과

- 손자회사를 이용하여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에서 제외되는 사례 방지
- 한편, 부동산 비율 계산 방법의 변경으로 상증세법상 주식평가에 영향 미침

□ 적용시기

2020. 7. 1.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

6.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정비 (상증법 §45의5, 상증령 §34의4)

□ 개정 전

현행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 규정은 특정법인의 결손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과세

구분	결손법인	흑자법인
과세대상 주주	최대주주 등 (주주1인 + 특수관계인)	지배주주 등 (지분율이 가장 높은 개인과 그 친족)
지분율 요건	지분율 요건 없음	지배주주 등의 지분율 50% 이상

□ 개정내용

결손, 흑자법인 구분을 폐지(지분율 요건 및 과세대상 주주를 일원화)하고, 증여세 한도(주주에게 직접 증여한 경우의 증여세 - 법인세 상당액)를 신설함

구분	과세 요건
과세대상 주주	지배주주 등(지분율이 가장 높은 개인과 그 친족)
지분율 요건	지배주주 등의 지분율 30% 이상

□ 개정의 효과

동일 기업이 흑자법인에서 결손법인(결손법인에서 흑자법인)으로 전환되는 시기, 증여시기 등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지는 점을 개선

□ 적용시기

2020. 1. 1.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

CONTACT



김근재 변호사
02-528-5572
kjkim@yulchon.com



김민석 회계사
02-528-5855
minseok@yulchon.com



Yulchon LLC

Korea | Vietnam | China | Myanmar | Russia | Indonesia*
* in association with Roosdiono & Partners

구독신청 | 율촌 간행물 더 보기 | Contact Us

법무법인(유) 율촌의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(유) 율촌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.